

# 부 산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06가단127012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X  
변 론 종 결 2008. 2. 29.  
판 결 선 고 2008. 4.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5.부터 2008.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17,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는 판결

##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인정 사실

(1) A는 2005. \*. \*. 18:50경 그 소유의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개인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삼선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주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주례 사거리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개인택시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개인택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8 내지 10,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a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b신경외과의원장, a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2005. \*.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b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06. 1.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b신경외과의원에서 퇴원하기 이틀 전인 2005. 12. 30.경 A를 대리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800,000원을 지급받되, 이후 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양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경추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c한의원,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d한의원,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e한의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f병원 등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06. 7. 10.경 f병원에서 경추 부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인지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 법원에서 한 신체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운동장애와 동통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약 1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결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불과 5일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라는 b신경외과의원의 최초 진단을 근거로 원고에게 아무런 후유장해가 없다는 전제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양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경추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6. 7. 10.경 f병원에서 경추 부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인지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이 법원의 신체감정축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척추운동장애와 동통 등에 대하여 장해율 약 14%의 한시장해(수상일로부터 1년 6개월간)라는 새로운 장해진단을 받은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합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합의가 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합의 당시 원고로서는 척추 운동장애와 동통 등의 후유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

로 보이고, 위와 같은 후유장해를 예상하였다라면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합의금액으로  
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합  
의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 가. 일실수입

##### (1)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1994. 4. 11.경 g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h지사 대리 근무하  
면서 월 평균 2,956,718원(= 35,480,620원 ÷ 12)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2)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8. 11. 17.까지

##### (3) 후유장해(신경외과 영역)

척추 운동장애와 동통 등 : 14%(맥브라이드표상 척주손상 항목 III-A-A(직업계수  
5)를 적용), 수상일로부터 1년 6개월간의 한시장해

##### (4) 가동능력상실률

원고에게 인정되는 앞서 본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동안의 치료내용, 결근과  
휴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의 입원치료 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까지는 소득의 100%를, 그 다음 날부터 위 사고일로부터 1년 6월(신경외과 영역의 한시장해기간)이 되는 2007. 6. 24.까지는 소득의 14%를 각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 : 원고가 구하는 935,444원

다. 공제 : 800,000원(합의금)

라. 위자료

참작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11, 갑제5호증의 1, 2, 4, 5,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g공사 h지사장, b신경외과의원장, a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1,837,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 \_\_\_\_\_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06가단127012	건명	손해배상(자)
성명	이승쾌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37세 1개월 7일
생년월일	1968-11-18	기대연령	38.38년
사고 발생일	2005-12-25	연명 종료일	2044-5-2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8-11-17

<노동능력상실률>

개별수치	%	중복계산
14.00%		14.00%

**[일일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일수입
1	2005-12-25	2006-1-24			2,956,718	100.00%	1	0.9958	0	0.0000	1	0.9958	2,944,299
2	2006-1-25	2007-6-24			2,956,718	14.00%	18	17.3221	1	0.9958	17	16.3263	6,758,117
일일수입 합계액(원):													9,702,416

**[기타 손해]**

(4) 기왕 치료비 935,444원

**일일수입+기타손해** 10,637,860원

**[공제]**

합의금 8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9,837,860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상 손해	재산손해+ 위자료
1	이승쾌	2,000,000	<b>9,837,860</b>	<b>11,837,860</b>